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1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건태·문진석·서영석

박수현 · 김성환 · 고민정

김현정 • 박희승 • 민홍철

권칠승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 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 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 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 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 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 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①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 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①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등의 대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 및 제

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재 정 안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 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 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 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 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신 설>

-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
 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 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 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 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 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 용하여야 한다.
 - <u>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u> <u>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u>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 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 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 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별도관리하여야한다.

- ①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 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 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 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저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u>제22조</u>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
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
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
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데32조(시정조치 등) ①
1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 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 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 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1항, 제22조제1형	3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	·음)

2.·3. (생략)

② ~ ④ (생 략)